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338
----------	------

발의년월일 : 2017. 4. 28.

발 의 자 : 김경환 의원 외 9명

## 1. 제정사유

- 우리구 의원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제정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 지역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 안제1조~안제3조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

### 나. 제2장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 : 안제4조~안제8조

- 안제4조)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규정 : 별표1, 별표2
- 안제5조, 안제6조)윤리심사 대상 및 방법 절차와 겸직사항 신고
- 안제7조, 안제8조)영리행위 제한 및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

### 다. 제3장 행동강령 운영 : 안제9조~안제12조

- 안제10조)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등 규정
- 안제11조, 별표3)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등
- 안제12조)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 규정

### 라. 제4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 안제13조~안제17조

마. 제5장 보칙 : 안제18조(비밀엄수), 안제19조(운영규정)

바. 개정사항 반영 등 정비 항목

- 겸직사항 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 보완 (안제6조, 안제7조)
-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 명시(안제8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및 횡수 제한 규정 도입(안제11조)
- “법” 또는 “영”의 조문내용을 반복 규정한 사항 삭제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8조, 제57조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사항 : 2017. 4. 24. ~ 5. 1. (7일간),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선의견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를 안제13조 제1목에 반영.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말한다.
2. “윤리실천규범(이하 “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규범을 말한다.
3. “의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이하 “윤리강령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2장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

**제4조(제정 운영)** ① 의회는 의원이 울산광역시 중구(제16조에서 “구”라 한다) 주민(별표 1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하는 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 57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겸직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의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해당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속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조에서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영리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활동

2. 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 외에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긍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업 또는 사업 활동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 선임 및 개선(改選)의 추천에 앞서 그 활동을 그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의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 제3장 행동강령 운영

**제9조(세부적 행동강령)** ① 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등)** ① 의원은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 개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외대상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등)** ① 의장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의원의 외

6 (제196회-본회의제2차부록)

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장은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의원의 외부강의 등 횟수를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이를 초과하는 의원은 미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때는 제외한다.

**제12조(서식)**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제13조(설치·구성)** 의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2.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의회부의장이 주재한다.
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장이 판단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6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 통지 및 징계요구)**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계 요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해당되는 의원의 징계요구 안건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8조(비밀엄수)** 윤리강령 등 운영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운영규정)** 윤리강령 등의 운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의장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제4조제1항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며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의원으로서 품의를 유지하고 구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여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구민으로부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의회상(象) 정립에 노력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공·사적 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구민에게 책임지는 민주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별표 2]

울산광역시 중구 의원윤리실천규범(제4조제2항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울산광역시 중구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9.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0.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1조제1항 관련)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30만원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마다, 기고의 경우 1건마다를 기준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이와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한 글		비 례 대 표	
명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명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하여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소명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b>금품 등 수수 신고서</b>					
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제공자	성 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 칭			대표자
		소재지			
신고취지 및 이유					
제공받게 된 경위					
수수 내용	일시·장소				
	금품 등 종류 및 가액				
수수 금품 등 반환	반환여부	<input type="checkbox"/> 반환 <input type="checkbox"/> 미반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반환일시·장소 및 방법 등 (반환의 경우)				
증거자료					
<p>「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p> <p>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적			
	지원기관 (단체)		지원받은 내역	
	기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동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 20 .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 유의사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9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 락 처	
청구금액				
반환금품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및	받은일시			
처리내역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랑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신청자와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타사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6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비용 청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주소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전 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날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519호, 2016.9.27.,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7.>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9.2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6.9.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9.27.]

**제12조 삭제 <2016.9.27.>**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7.]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7.>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9.27.]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9.27.]

##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27.>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는 외부의등 부터 적용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44호, 2016.12.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100-6148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38)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7. 4. 28.(금)
- 나. 제출자 : 김경환 의원 외 9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5. 8.(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5. 11.(목)

## 2.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김경환 의회운영위원장)

- 우리구 의원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제정 운영중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5.3.27.공포, 2016.11.30.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6.9.28.시행)에 따라 겸직신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지역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
- 제2장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 : 안 제4조 ~ 안 제8조
  - 안 제4조)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규정 : 별표1, 별표2
  - 안 제5조, 안 제6조)윤리심사 대상 및 방법 절차와 겸직사항 신고
  - 안 제7조, 안 제8조)영리행위 제한 및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
- 제3장 행동강령 운영 : 안 제9조 ~ 안 제12조
  - 안 제10조)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등 규정
  - 안 제11조, 별표3)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등
  - 안 제12조)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 규정
- 제4장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 안 제13조 ~ 안 제17조
- 제5장 보칙 : 안 제18조(비밀엄수), 안 제19조(운영규정)
- 개정사항 반영 등 정비 항목
  - 겸직사항 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 보완(안 제6조, 안 제7조)
  -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및 횡수 제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 “법” 또는 “영”의 조문내용이 반복 인용되는 사항 삭제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는 유사 성격을 가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청탁금지법)」 제정·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인 겸직신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운영하여,
- 지역의원들의 바른 행동과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으로 주민들의 신뢰와 청렴국가 건설에 앞장서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입법의 절차수행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검토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